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22. 1.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구역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서식,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결과 통보 서식·내용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1항 단서”를 “제6조”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체 구성 현황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협의체 협의 결과의 내용)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
의 결과에는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제2호”를 “영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의2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
의 경계변경)”을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승인 신청 및 경계변경 신청의 서식)”을 “(자치구가 아

닌 구와 읍·면·동의 승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실태조사서”를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 ○ 시·도, ○ ○ 시·군·자치구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1. 경계변경 대상지역

편입되는 지역	⇒	편입받는 지역

2. 경계변경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3. 경계변경 전·후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변 경 후			
		면적 (km ²)	인구 (명)	동리 (개)	자체 수입 (천원)	면적(km ²)		인구(명)		동리(개)		자체 수입 (천원)		면적 (km ²)	인구 (명)	동리 (개)	자체 수입 (천원)
						증	감	증	감	증	감	증	감				
편입 되는 지역	시·군·자치구																
	구·읍·면																
	동·리																
편입 받는 지역	시·군·자치구																
	구·읍·면																
	동·리																

※ 자체수입 : 지방세(시군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기재

※ 면·동·리 : 법정면·법정동·법정리를 기재하고, 행정면·행정동·행정리 수는 () 안에 기재

4. 경계변경에 따른 장·단점

장 점	단 점

5.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

가. 지역의 일반적 특성(연혁, 지형, 지세 등)

나. 거리, 교통편

구 분	현 행	변 경 후
○ 시·군·자치구청간 ○ 구·면·동사무소간	· 거 리 : km · 교통노선 ┌ 이용수단 : └ 횡 수 : └ 소요시간 : └ 요 금 :	· 거 리 : km · 교통노선 ┌ 이용수단 : └ 횡 수 : └ 소요시간 : └ 요 금 :

다. 주민생활권

(1) 시장권 : 지역명, 거리(km)

(2) 학 구

구 분	현 행	변 경 후
초등학교	관내/관외 ○○초, km	관내/관외 ○○초, km
중 학 교	관내/관외 ○○중, km	관내/관외 ○○중, km
고등학교	관내/관외 ○○고, km	관내/관외 ○○고, km

※ 현재 이용하는 곳(관내, 관외)에 ○표

(3) 특별관서 이용현황

특별관서별	현 행	변 경 후
	특별관서명 km	특별관서명 km

6. 개발권역과의 관계

가. 개발권역과의 합치 여부

나. 장래의 전망

7.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

- 가. 생업상의 공통성
- 나. 지역적 감정대립정도
- 다. 경제적 유대정도
- 라. 생활·풍속상의 상이성

8. 경계획정수단

- 가. 자연적 지형지물(산, 강, 도로 등)
- 나. 인위적인 경계(좌표 등)

9. 지역의견

- 가. 행정기관 의견

구 분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읍·면·동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나. 주민의견

- (1) 편입되는 지역 주민
- (2) 편입잔여 지역 주민
- (3) 편입받는 지역 주민

- 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10. 종합의견

※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별지로 작성

종 합 의 건 서

대 상 지 역	편입되는 지역명 ⇨ 편입받는 지역명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지목별·지번별 조서

1. 지목별 조서

읍
면
리
동

지목별	필지 수	지적	비고
계		km ²	

※ 작성방법

- 1) 법정동·법정리 단위로 각각 별지에 작성
- 2) 총괄표를 상단에 첨부

2. 지번별 조서

구·읍·면별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비고
계				km ²	
소 계					
면	리				

※ 작성방법

- 1) 법정동·법정리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2) 자치구가 아닌 구·읍·법정면 단위로 소계를 기재
- 3)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그 동·리의 끝에 일괄 기재
- 4) 지번순서로 총괄작성하되 비고란에 편입, 제외 결번을 구분하여 명기

11. 관할구역도(별지작성)

관 할 구 역 도 작 성 방 법

가. 변경 대상 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

나. 작성 도면

- 축적 1/5,000과 1/50,000의 원도 각 2장(크기 : B4)
(1장 : 조정 내용 표기, 1장 : 백지도)
- 법정동·법정리 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1,200의 접합도 추가

다. 표기 요령

- 시·도 간 경계 -----<·>-----<·>----- (검은색)
- 시·군·자치구 간 경계 ----- · · ----- (파란색)
- 읍·면·동 간 경계 ----- · ----- (검은색)
- 시청 소재지 : ◎(붉은색) ○ 편입되는 지역 : 연파란색
- 군청 소재지 : ◎(파란색) ○ 편입받는 지역 : 연노란색
- 읍·면 소재지 : ○(붉은색) ○ 조정대상 지역 : 연노란색
- 출장소 소재지 : △(붉은색) ○ 신설되는 구·읍·면지역 : 연녹색
- 편입 대상지 경계(예시) ----- · · ----- (녹색)
- 도로(통행로) 방향 : ----->(갈색)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

사 업 지 구 명	
소 재 지	
사 업 종 목	
사 업 승 인 내 용	○ 사업승인번호 ○ 사업기간 및 사업 확정일 ○ 사업 내용
사 업 시 행 자	
사 업 근 거	

위의 토지 개발·정비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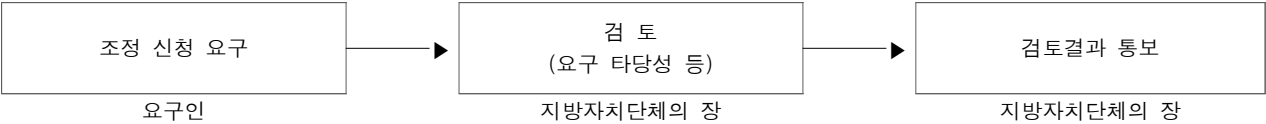
요구인

(직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구역 변경 조서 1부 2.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1부 3. 행정구역 변경도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행정구역 변경 조서

[illegible]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시도 시·군·구 구·읍·면·동 리에서 시도 시·군·구 구·읍·면·동 리에 편입)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지 번	지 목	총면적 (㎡)	이동 면적 (㎡)	비 고
시·도	시·군·구	구·읍·면·동	리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현황

1. 협의체명 :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2. 구 성 일 : 년 월 일
3. 운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4. 위원구성 : 명
5. 의결방식 :
6. 위원 세부현황

구 분	계	○○구	○○시	○○광역시	○○도
계	명	명	명	명	명
시·군·구 소속 공무원	명				
시·군·구 의회 의원	명				
시·군·구 관할 시·도 소속 공무원	명				
시·군·구 관할 시·도 의회 의원	명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	명				
경계변경 전문가	명				

※ 작성방법

- 1) 계란은 인원을 기재하고, 그 밖의 란은 성명을 기재
- 2) 경계변경 전문가의 성명 기재란에는 () 안에 현재 소속 및 직위를 추가 기재

시·군·자치구청장

직인

시·군·자치구청장

직인

시·도지사

직인

시·도지사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6조----- -----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 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 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신 설>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체 구성 현황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협의체 협의 결과의 내용)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에는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
 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
 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
 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2. (생략)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
 위) 영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
 항제2호에 따른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
 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
 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
 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
 ·수산·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
 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

한다.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

 -----.

1. 2.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
 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

우에는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

-----.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

----- 별지 제6호서식 -----

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 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 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생략)

제10조(승인 신청 및 경계변경 신청의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

----- 법 제7조제1항-----

--.

1. 별지 제3호서식-----

2. 별지 제4호서식-----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승인 신청) -----

-- 법 제7조제1항 -----

----- 실태조사

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

-----.

1. -----

----- 별지 제7호서식-----

2. -----

----- 별지 제8호서

<u>식의 실태조사서</u> <u>제11조(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u> <u>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u>별지 제6호서식</u> 2. 읍·면·동 설치의 승인: <u>별지 제7호서식</u>	<u>식</u>----- <u><삭 제></u> 제13조(승인서의 서식) ----- ----- ----- ----- -----. 1. ----- -- <u>별지 제9호서식</u> 2. ----- <u>별지 제10호서식</u>
--	--